남북한 식품 안전 규정 비교

Comparison of Food Safety Regu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이광재[1], 김재명[1], 김중범[2], 정한범[3*]

Goang-Jae Lee[1], Jai-Moung Kim[1], Jung-Beom Kim[2], Hanbeom Jeong[3*]

[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순천대학교 식품공학과, [3]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1]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
[2]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Sunchon National University
[3]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정 한 범

Correspondence to

Hanbeom Jeong,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Director, National Defense Policy Cente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eoul, Korea, (54-99, Duteopbawi-ro, Yongsan-gu, Seoul, Korea)
Tel: +82-41-831-5152
Fax: +82-2-748-7588
E-mail: jeonghb@gmail.com

서론

남한의 식품 관련 법률은 식품 안전 기본법(MFDS, 2021a) 및 식품위생법(MFDS, 2021b), 축산물 위생관리법(MFDS, 2021c),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MFDS, 2021d),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MFDS, 2021e),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MFDS, 2021f), 먹는물관리법(ME, 2021) 등 여러 부처에 관련 법이 연계되어 있으나 북한은 식료품 위생법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관리되고 있다(DPRK, 2013). 이 중에서도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관리는 남한의 경우 식품위생법, 북한의 경우 식료품 위생법에 각각 기술되어 있다.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은 24년 전인 1998년에야 제정되었으나 남한의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되어 북한과 비교 시 36년 앞서 제정되었다.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이 "식료품의 위생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DPRK, 2013) 하고, 남한의 식품위생법은"식품의 위생 보장 및 국민의 건강증진 이외에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MFDS, 2021b).

북한의 2013년 4월 개정된 식료품 위생법은 전체가 32조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남한의 식품위생법은 13장 102조로 구성되고, 하위 규정으로 시행령 67조와 시행규칙 101조 그리고 각각의 부칙과 별표, 서식 등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표시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식품공전(MFDS, 2021g)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별도의 규격을 고시로 관리하고 있다.

북한 식품공장에서 생산한 식품을 남한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식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남한의 법규와 강제 및 비강제 규범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한 식품 제조공정과 가공식품의 안전수준이 동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남북한 식품 제조공장 및 가공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동등화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 수준이 높은 남한의 필요조건을 파악하고 북한 식료품 공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과 남한의 식품위생법 비교 연구(Lee, 2009)와 북한의 식의약 관리 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Son, 2009) 등 남북한 법규 비교에 한정되어 있고,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이 남한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식품위생 수준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론

1. 영업의 허가와 영업장 관리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 4조에 보건 지도기관은 위생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7조에 식료품의 오염막이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허가와 영업장 관리에 대해 남한에서는 식품위생법(MFDS, 2021b) 36~39조와 43조에 영업의 제한과 44조에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MFDS, 2021b) 21조에 영업의 종류, 23~26조에 영업의 허가, 신고 및 등록, 28조에 영업의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MFDS, 2021b) 40조~44조에 허가 등의 신청 및 폐업신고, 48조에 지위 승계 방법 등을 세부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은 영업장과 작업장의 구분이 없는 반면에 남한의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MFDS, 2021h) 등의 준수를 규정하고 영업장을 작업장, 화장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로 세분화하고 각각 시설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작업장의 시설기준을 포함한 시설관리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 7조에 식료품의 오염막이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24조에 식료품 생산 취급시설의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7조에 식료품을 생산 취급하는 기업소의 위생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업장 시설기준과 관리에 대해 남한에서는 식품위생법(MFDS, 2021b) 36조에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MFDS, 2021b) 36조에 업종별시설기준(MFDS, 2021b), 62조에 따른 HACCP(MFDS, 2021h)에 작업장 기준과 건물 바닥, 천장, 배수, 통로, 출입구, 채광 및 조명 등에 대한 세부 요구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위해도가 높은 식품과 국민 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하여 HACCP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에는 해당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종사자 교육을 포함한 작업자 위생관리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 3조에 식료품 생산 · 취급 일군에 대한 교양 사업 강화와 5조에 생산, 판매, 공급에서 정해진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조에 일군에 대한 위생시설과 위생 보호 물자를 정해진 대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5조에 해당 일군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수검 받도록 규정하고, 28조에 식료품 위생에 대한 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 교육 및 위생관리에 대해 남한에서는 식품위생법(MFDS, 2021b) 40조에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41조에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등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MFDS, 2021b) 27조에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MFDS, 2021b) 49조에 건강진단 대상자와 50조

에 영업에 제한되는 질병의 종류 그리고 51조, 52조, 53조에 식품위생 교육기관과 교육 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MFDS, 2021b)에 종사자에 대한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HACCP 의무적용 영업장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복장 기준 및 세척, 소독기준, 종사자 간 교차오염 관리기준까지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HACCP 규정(MFDS, 2021h) 등을 통해 개인위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에는 개인위생 기준을 위생용품 등을'정해진 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생산제품의 품목 제조보고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 6조에 식료품 생산기관 등에서 식료품 표준조작법을 만들고 해당 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목 제조보고에 대해 남한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MFDS, 2021b) 45조에 제조 방법을 포함한 내용을 별지 43호 서식에 따라 등록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6조에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식품위생법에 식품의 유형에 따른 세부 내용을 식품공전(MFDS, 2021g)에 수록하고 있으며, 품목 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식품의 유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항목이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제품의 식품의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에는 표준조작법에 대한 승인 규정 외의 세부 규정이 없어 북한에서 제조된 식품을 남한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동등성 원칙에 따라 남한의 식품공전 상 어떤 유형에 적용되는지 구분이 필요하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 항목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원료관리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 9조에 위생 기준에 적합한 원료 자재 이용과 부패, 변질, 오염된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11조에 식료품 첨가물(자연색소, 향료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14조에 식료품과 그 원료, 첨가물을 수입할 경우 품종별로 등록하고 위생 안전성 검사 후 위생방역기관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료관리에 대해 남한에서는 식품위생법(MFDS, 2021b) 5조, 6조, 7조에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금지와 기준 ·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MFDS, 2021b) 2조에 원료 보관실의 위생적 관리 등을 규정하고, 식품공전(MFDS, 2021g)에 동식물성 원료의 분류와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식품 원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품공전 [별표 1]~[별표 3]에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목록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원료 등을 제시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식품 원료의 사용과 품질 및 안전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에서는 원료관리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승인 기준이나 승인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남한의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의 구비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식품공전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식품 원료를 사용한 북한 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 용수관리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에는 용수관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에 남한의 식품위생법(MFDS, 2021b) 36조 시설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ME, 2021)에 따른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급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HACCP (MFDS, 2021h)에서는 용수 검사, 저수탱크, 배관 관리 등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용수를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식료품 위생법과 연관하여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조사되지 않았다.

7. 제조공정관리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 10조에 살균, 가열, 냉각 같은 주요공정을 준수하고 공정에 대한 위생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공정관리에 대해 남한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MFDS, 2021b) 2조에 공정관리 규정과 식품공전 총칙에 제조 · 가공기준을 규정하고, 식품공전(MFDS, 2021g)에 식품 유형별로 제조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 가공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HACCP(MFDS, 2021h) 의무적용 품목인 경우, 공정별 위해요소분석을 통한 중요 관리공정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에서는 살균, 가열, 냉각 공정과 같은 일부 중요공정에만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국제 수준의 HACCP 관리와 위해요소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북한의 제조공정관리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8.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관리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 20조에 용기, 포장재를 생산하는 단체의 위생성 보장 규정과 21조에 용기, 포장재, 생산단체에 대한 위생방역 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위생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관리에 대해 남한에서는 식품위생법(MFDS, 2021b) 8조, 9조에 유독 기구에 대한 판매금지와 기준 및 규격이 규정되고 용기 · 포장 관련 규격에 공통규격 및 세부적인 재질별 규격 그리고 시험방법 등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MFDS, 2021b) 36조 업종별 시설기준에 식품 취급시설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안전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남한의 경우 식품 및 용기 · 포장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HACCP에서는 검사성적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에 세부적인 기준 및 규격과 시험 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 공장에서 사용하는 용기 · 포장의 재질 등에 대해서도 남한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9. 검사관리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 13조에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식료품의 위생 안전성을 검사, 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관리에 대해 남한에서는 식품위생법(MFDS, 2021b) 15조에서 35조까지 위해 평가 및 위생 검사, 검사명령, 자가품질검사,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에 관해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MFDS, 2021b) 4조에서 20조까지와 동법 시행규칙(MFDS, 2021b) 5조에서 35조까지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에 대한 검사항목은 식품공전(MFDS, 2021g)에 세부적인 기준과 규격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경우 식료품 위생법에 해당 기관에서 위생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있으나, 남한의 경우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식품공전(MFDS, 2021g)에 규정하고, 용기 · 포장은 별도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주체도 정부, 민간(소비자단체), 생산자(자가품질검사) 등으로 세부화하여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HACCP(MFDS, 2021h)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시설, 설비, 기구에 대한 검사 그리고 위해요소분석을 위한 원료, 제조공정에 대한 검사, 작업자 위생에 대한 검사 등 광범위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10. 보관 · 운반 관리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 15조에 식료품을

위생적 요구에 맞게 보관하여 부패와 변질, 오염 같은 피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16조에 위생 조건에 맞는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제때 운반하는 것과 수송 수단에 대한 세척, 소독을 규정하고 있다. 보관 · 운반 관리에 대해 남한에서는 식품위생법(MFDS, 2021b) 3조 및 동법 시행규칙(MFDS, 2021h) 2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과 동법 시행규칙(MFDS, 2021b) 36조 업종별 시설기준에 보관 및 운반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공전에 유통기간의 설정 등 보존 및 유통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HACCP(MFDS, 2021h)에서는 운송과정의 교차오염 방지와 차량 관리, 보관 시 선입선출과 이격 및 구분관리 등 세부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에서는 위생 조건에 맞는 수송 수단을 이용한다고 단순히 규정하고 있으나, 남한의 식품위생법과 그 관련 규정에서는 냉동, 냉장, 실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관 기준과 관련한 보관, 운반 상태의 기록,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1. 위해 식품의 회수

위해 식품 회수에 대해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DPRK, 2013)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남한의 식품위생법(MFDS, 2021b) 45조 위해 식품 등의 회수와 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MFDS, 2021b) 31조 위해 식품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 동법 시행규칙(MFDS, 2021b) 58조에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기준과 59조 회수계획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HACCP(MFDS, 2021h)에서는 부적합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 절차, 방법, 로트관리 등 원인 규명에 필요한 사항과 회수 관련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회수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식료품 위생법에는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북한에서 생산한 식품을 남한에 유통할 경우 식품 회수는 남한의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회수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식품위생 수준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비교하였다.

영업의 허가 및 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면, 북한은 영업장과 작업장의 구분이 없는 반면에 남한은 영업장을 작업장, 화장실, 탈의실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작업장 시설기준에 대해 비교해 보면, 남한은 위해도가 높은 식품과 국민 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하여 HACCP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북한은 해당 기준이 규정이 없다. 작업자 위생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면, 남한은 개인위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용수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면, 남한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용수를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식료품 위생법과 연관된 관리기준은 조사되지 않았다. 보관 · 운반 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면, 북한은 위생 조건에 맞는 수송 수단을 이용한다고 단순히 규정하고 있으나 남한은 냉동, 냉장, 실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관 기준과 기록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식품을 남한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남한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북한의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품목 제조보고에 대해 비교해 보면, 남한은 식품 유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세부 규정이 없다. 원료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면, 남한은 식품 원료의 품질 및 안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구체적 규정이 없다. 기구 및 용기 · 포장 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면, 남한은 세부적인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검사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면, 북한은 단순히 해당 기관에서 위생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있으나 남한은 식품공전에 적합하고 정부, 소비자단체, 생산자가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식품을 남한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식품공전에 따른 품질검사, 원료의 구비요건, 용기 · 포장의 재질 등을 별도로 검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조공정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면, 북한은 일부 중요공정의 위생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한은 국제 수준의 HACCP과 위해요소분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식품을 남한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제조공정관리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위해 식품의 회수에 대해 비교해 보면, 북한은 식료품 회수 규정이 없어 북한 식품을 남한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식품 회수는 남한의 유통회사가 회수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와 같이 분단되었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 간 비슷한 식품위생 관리 수준이어서 동독과 서독 간의 식품 유통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기준,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수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을 남한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식품안전 측면에서 북한의 낙후된 시설뿐 아니라 기록관리, 표시사항, 회수관리, HACCP 의무화 등에 실질적 동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고 문헌

1.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anitaion Act. pp. 1-4 (2013)

2. Hee-Doo Son. Food and pharmaceutical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pp. 26-52 (2009)

3. ME(Ministry of Environment).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vailable from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undefined. Accessed Dec. 10. 2021

4.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asic Act on Food Safety. Available from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D%ED%92%88%EC%95%88%EC%A0%84%EA%B8%B0%EB%B3%B8%EB%B2%95#undefined. Accessed Dec. 10. 2021a

5.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Food Sanitation Act. Available from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undefined. Accessed Dec. 10. 2021b

6.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Functional Foods for Health Act . Available from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undefined. Accessed Dec. 10. 2021d

7.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sfety Control . Available from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undefined. Accessed Dec. 10. 2021e

8.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pecial Act on Children Dietary Life Safety Management. Available from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undefined. Accessed Dec. 10. 2021f

9.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rean Food Code. Available from : https://foodsafetykorea.go.kr/foodcode/01_01.jsp. Accessed Dec. 10. 2021g

10.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Food and Livestock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Available from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B%9D%ED%92%88%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D%B8%EC%A6%9D%EA%B8%B0%EC%A4%80#liBgcolor1. Accessed Dec. 10. 2021h

11. Se-Jeong Lee. A Comparative Study of Food Sanitation Laws in North Korea and Food Sanitation Law in South Korea. Available from : https://search.naver.com/

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B%B6%81%ED%95%9C%EC%9D%98+%EC%8B%9D%EB%A3%8C%ED%92%88+%EC%9C%84%EC%83%9D%EB%B2%95%EA%B3%BC+%EB%82%A8%ED%95%9C%EC%9D%98+%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EB%B9%84%EA%B5%90+%EC%97%B0%EA%B5%AC. Accessed Dec. 10. 2021